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6 선고 2018가단302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2018. 6. 5.

판결 선고2018. 6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9,554,691원 및 그중 38,250,000원에 대하여 2016. 1. 1.부터 2018. 4. 11.까지는 연 12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민아

별지